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1(목) 10:00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9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7. 13.
- 라. 회부일자 : 2022. 7. 13.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매입 1건임.

[취득 재산 총괄표]

(단위 : m²,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소 재 지	토 지		소요예산	비고
			지 목	면 적		
1	호암산자락 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	시흥동 산79	토지	1,256	297	
		시흥동 산79-6	토지	1,273		
		시흥동 산78	토지	496		

가. 호암산자락 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 1) 시흥계곡 활성화(생태계류 복원, 도시농업농장 등)를 통해 시흥동의 부족한 녹지·여가공간을 확보하고 금천구를 대표하는 공원 조성
- 2) 도시농업공원 조성으로 주민 도시 텃밭 체험 등 도시농업 활성화
- 3) 총 사업비 : 297백만원
- 4) 토지매입 : 3,025m²

4.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이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건이며, ‘호암산자락 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건임.

나. 사업내용

‘호암산자락 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흥계곡 활성화(생태계류 복원, 도시농업농장 등)를 통해 시흥동의 부족한 녹지·여가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천구를 대표하는 생태치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표1과 표2 참조>

표1 사업개요

- 사업명 : 호암산자락 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
- 위치 : 시흥동 416 등 9필지 ※ 금회 대상지 : 시흥동 산79 등 3필지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비 : 1,087백만원(국비 917, 구비 170)
 - 토지보상비 : 1,039백만원 / 설계비 : 48백만원
- 금회 대상지(3필지) : 3,025㎡, 매입비 297백만원
- 추진일정 : 2021. 1. ~ 12. ‘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2. 1. ~ 5. 토지매입 협의 → 불발

- 2022. 6. 사업 대상지 변경계획(구청장 방침)
- 2022. 7.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안 구의회 승인
- 2022. 8. 매매계약체결 완료 및 공유재산 취득 통보(재무과)

표2 위치도



다. 검토결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매입 1건으로, ‘호암산자락 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시흥동의 부족한 녹지·여가공간 확보 및 주민 도시텃밭 체험기회 제공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금천구를 대표하는 생태치유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31.,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